

발급번호 : 0507-7753

## 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『축산법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4년 09월 02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

성명 : 정혜인

신청인	성명	김남옥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8130202
업소명	(주)팜스코	법인유형		
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4년 08월 30일
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		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30045002123(1162)	1	130045002123(1179)	1+	130045002123(1195)	1+
130045002123(1163)	1	130045002123(1180)	1	130045002123(1196)	1
130045002123(1164)	1+	130045002123(1181)	1+	130045002123(1197)	1
130045002123(1165)	1	130045002123(1182)	1+	130045002123(1198)	1+
130045002123(1166)	1	130045002123(1183)	1+	130045002123(1199)	1+
130045002123(1167)	1+	130045002123(1184)	1+	130045002123(1200)	1
130045002123(1168)	1	130045002123(1185)	1+	130045002123(1202)	1+
130045002123(1169)	1+	130045002123(1186)	1	110142400694(1203)	1
130045002123(1170)	1+	130045002123(1187)	1+	110142400694(1205)	1+
130045002123(1171)	1	130045002123(1188)	1+	110142400694(1207)	1
130045002123(1172)	1+	130045002123(1190)	1	110142400694(1211)	1+
130045002123(1174)	1	130045002123(1191)	1+	110142400694(1212)	1+
130045002123(1175)	1+	130045002123(1192)	1+	110142400694(1213)	1
130045002123(1177)	1	130045002123(1193)	1+	110142400694(1214)	1
130045002123(1178)	1+	130045002123(1194)	1	110142400694(1218)	1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4년 08월 30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 
성명 : 배재희  
(서명)

(수의사 면허번호 : 22168 )

발급일자 : 2024년 09월 02일

※ 등 확인인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r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남풀내역은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남풀 등의 사유로 추가 벌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] 80 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

원본대조필

제 출부10-20240830-0014-0 호

## 도축검사증명서

1. 가축의 종류 : 돼지

2.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63 (130045002123)

3. 중량 : 5697 kg, 내장 등 기타 882 kg

4. 작업장장명 : (주)팜스코

5. 검인번호 : 충북10

6. 도축일자 : 2024년 08월 30일

7. 도축의뢰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75-1

성명 김남옥

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인천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

9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 국가명 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경과여부 :

10. 검사를합격 식육의 처분 :

폐기( 28.5 kg), 식용 의 용도전환( 0 kg)  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